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도 차등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과태료 부과적용 조항은 79개이며, 그동안은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이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차 위반 시 부과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2·3차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지시 또는 경고 후 과태료 부과조항(44개) 등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인 경우 1:5:10의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50만원(1차), 25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이 부과되는 것이다. 아울러 작업중지 후 과태료 부과조항(12개) 등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30%인 경우 3:6:10 비율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과태료는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등의 비율로 부과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행 집무규정상 즉시 과태료 부과조항, 감독관의 검사·점검·질문 등에 대한 거부·방해, 역학조사 협조 의무 위반은 현행 부과 최고 금액을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같은 읍·면·동 소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들이 같은 시·군·(자치)구 지역에 있거나 상호간 15km 이내 지역에 있으면 공동선임이 가능해진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이후 시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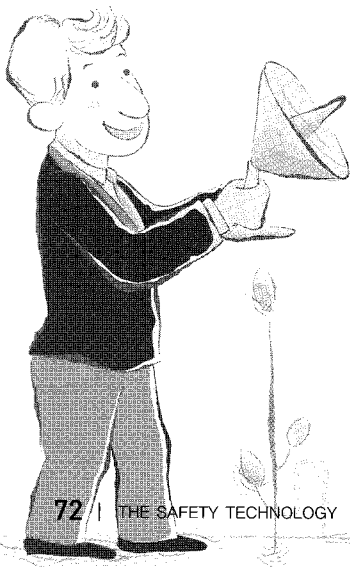
9월까지 산업재해자 전년 동기 대비로 311명 증가

올해 9월까지의 산업재해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6일 발표한 9월까지의 산업재해자수는 총 72,071명, 그로 인한 재해율은 0.4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71,760명, 0.51%)에 비해 재해자수는 311명(0.4%) 증가하고, 재해율은 0.02%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상반기 재해현황에서 전년대비로 재해자수는 6.3%(2,861명), 재해율은 0.01%가 증가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7~9월까지의 재해자수와 재해율은 모두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망자수는 1,592명, 사망만인율은 1.09%로 전년 동기대비로 각각 61명(3.7%↓), 0.08%(6.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고성 사망자수는 965명,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66%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로 84명, 0.08%(10.8%↓)가 감소했다. 재해자를 종류별로 보면 사고성 재해자는 총 66,302명으로 지난해보다 776명이 증가했고 업무상 질병자수는 5,769명으로 지난해보다 46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재해예방 대책 발표

서비스업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업 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마련,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월 1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7대 세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업종에 대해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 7대 업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비스업 재해자 중 이들 업종의 재해자(29,742명)가 8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음식점중앙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들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신설토록 하는데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주택법



등에 법정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을 일정시간 배정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진단대상 이외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관서 주관의 사업주 특별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집중방문 기술지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4無 사회 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여기서 4無 캠페인은 △대충대충하는 적당주의 없는 사회 △빨리빨리하는 조급증 없는 사회 △살마하는 안전불감증 없는 사회 △아차 후회하는 안전사고 없는 사회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제공, 안전사고 체험수기 및 안전보건 사용자 UCC 공모, 위험사례 경진대회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도 펼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법적용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혁신 TF'가 올해말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는 안전보건 기준 신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처음 마련된 서비스업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앞으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재자 10명 중 3명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은 산업기계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모두 89,100명인데, 이중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자가 28,441명(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계는 건설, 제조 등 각종 산업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동기 및 발전기, 프레스, 지게차 등을 말한다. 재해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산업기계별로는 프레스(1,430명), 기계톱(1,364명), 연삭기(1,203명), 지게차(1,157명), 전단기(844명), 크레인(652명) 등의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 형태별로는 감김·끼임사고(12,185명)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재해유형이었으며, 그 뒤는 충돌·접촉, 물체의 낙하 및 날아와 다칩, 넘어짐, 추락사고 등의 순이었다. 감김 및 끼임사고는 기계의 회전부나 움직이는 칼날 사이에 작업자의 손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절단되는 형태가 많았다. 충돌 및 접촉사고는 주로 기계의 구동부에 접촉하거나 충돌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낙하 및 비래사고는 기구의 파손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하거나, 선반이나

연삭기 작업 중 날아온 물체에 맞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암물질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이 체계적으로 평가·관리된다.

지난 10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방식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각 제도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제도에 따라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 물질'로 상이하게 규정된 용어가 '발암성 물질'로 일원화되고,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게 된다.

GHS는 발암성 물질을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1A)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1B)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1A나 1B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2) 등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유해성이 큰 물질 속에는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도 들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발암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상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노·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발암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12월 17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방청별로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6개 지방청별로 점검대상 물량을 배정하여, 12월 17일까지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재 예방 100일 계획(6월 7일~9월 14일)으로 조성된 산재예방분위기를 연말까지 지속시켜나가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도 하되, 넘어짐·끼임·떨어짐 등 3대 재래형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타워크레인 설치현장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부당집행 등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122)

